

日本の 디지털(Digital)動産讓渡登記制度에 관한 考察

朴 鑛 棟*

차 례

- I. 머리말
- II. 입법과정과 이용 현황
 - 1. 입법과정
 - 2. 이용 현황
- III. 주요내용
 - 1. 등기절차
 - 2. 중요사항
 - 3. 개선논의
- IV. 도입방향
 - 1. 법제도적 측면
 - 2. 입법적 측면
- V. 맺음말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I. 머리말

최근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 이외의 재고상품이나 기계설비 등의 동산을 활용하는 자금조달의 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¹⁾. 그런데 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업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는 방법과 동산을 유동화·증권화 목적으로 양도해, 양도대금으로 해서 자금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어느 방법에 의해서도 동산 자체는 양도 후에도 기업의 직접점유하에 있는 것이 통상이다.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는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이라고 하는 외형적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공시방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점유개정의 유무·선후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²⁾.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담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등을 양도 내지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공시방법을 창설하여 각종 첨단산업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마련의 편의를 도모하고, 객관적인 공시로 거래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동산·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였다³⁾.

일본에서는 이미 이러한 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동산양도에 의한 법적 분쟁의 미연의 방지 및 입증의 용이성 때문에⁴⁾, 법인이 하

1) 최근 부동산 이외에 자금조달지원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기업이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질권설정은 담보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관계로 잘 이용되지 않아 재고자산 등의 담보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양도담보는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2중양도가 발생하는 등 권리자보호에 문제점이 있었다(법원행정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행정처, 2007, 1-2면).

2) <http://www.moj.go.jp/MINJI/DOUSANTOUKI/seido.html>(2008.4.20); 김인유, “집합동산 양도의 새로운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3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3, 359-360면; 배성호, “동산양도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일본의 새로운 동산공시법을 참조하여”, 『재산법연구』 제23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6, 45-46면; 윤부찬,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2권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9, 427면.

3) 법원행정처, 전거서, 1-2면.

4) 法務省民事局商事課, “動産讓渡登記制度運用開始後1年間の利用状況について”, 『民事月報』 Vol.62.1, 法務省民事局, 2007.1, 102頁; 池田眞朗, “債權讓渡登記および動産讓渡登記の利

는 동산양도에 대한 새로운 공시제도로서 2005년 10월부터 동산양도등기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종래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양도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동산 및 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양도특별법)』을 제정하였다⁵⁾.

일본의 경우 동산양도등기의 신청이나 각종 증명서청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창구출두, 송부, 온라인⁶⁾의 3가지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⁷⁾.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동산양도등기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제도와 마찬가지로 동산양도등기에 있어서도 디지털동산양도등기가 시행되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이러한 디지털동산양도등기가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고, 이를 통해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의 도입시에 필요한 법제도 및 입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입법과정과 이용 현황

1. 입법과정

일본에서도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중 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점유개정이라는 공시방법의 안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배경으로, 『규제개혁추진 3개

用とオンライン申請”,『みんけん』 No.592, 誌友會民事研修編集室, 2006.8, 3-4頁; http://www.moj.go.jp/MINJI/DOUSANTOUKI/dousan_qa.html(2008.4.20).

5) 民事局商事課, 前掲論文, 102頁; 土手敏行, “現在の動産讓渡登記および債權讓渡登記の利用狀況ならびに今の動向について”, 『NBL』 No.831, 商事法務, 2006.4.15, 24頁.

6) 동산양도등기는 이른바 집합동산양도담보를 위해서 새롭고 명료한 공시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향후 동산재고의 가치평가수법이나 환산처분을 위한 시장의 형성 등이 진행된다면, 그 사용율은 급진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동산양도등기도 채권양도등기와 같이 온라인 신청의 대상이 되어 있다[池田眞朗, 前掲論文, 6頁].

7)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제15조에서 등기신청의 방법으로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에 의한 신청이나 방문시 구술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법원행정처, 전거서, 80면).

년 계획(재개정)』(2003년 3월과 8월 내각의 결정)에서, 『동산·채권 양도 담보법제의 정비에 의한 자금조달의 원활화』에 관하여 ‘신규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의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는 관점도 감안해, 동산담보법제 및 채권담보법제의 정비에 관한 요구의 유무,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다’라고 결정을 하였다. 그 후,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2003년도 개정에 대하여』(2004년 1월 19일 내각의 결정)에서, ‘부동산에 의하지 않는 재고(在庫) 등을 활용한 담보제도(동산 양도의 공시제도 등)를 실현한다’라고 결정하였고, 또한 『규제개혁·민간 개방추진 3개년 계획』(동년 3월 19일 내각의 결정)에서는, ‘동산담보 및 채권담보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인다고 하는 관점에서 동산양도 및 채권 양도의 공시제도를 정비한다’라고 결정하였다⁸⁾.

그리고 2004년 10월 12일 내각의 결정을 거친 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일부의 개정을 하는 법률안』이 제161회 국회에 제출되었다(내각제출법률안 제18호).

동년 11월 25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년 법률 제148호)이 성립하였다. 그리고 그 시행은 2005년 10월 3일에 시행이 되었다⁹⁾.

2. 이용 현황

2006년 1월 19일에 IT전략본부가 책정한 IT신개혁신책에서는, ‘국가·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신청·신고 등 절차에 있어서의 온라인이용율을 2010년도까지 50%이상으로 한다’라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은 2007년 11월말까지 행해지지 않았다¹⁰⁾. 구체적으로 2007년 11월 현재 483건수에 37,111개의 동산에 등기가 행해졌다. 또

8) 植垣勝裕/ 高山崇彦/ 中原裕彦, “法令解説 動産讓渡登記制度の創設及び債權讓渡登記制度の見直し--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時の法令』 通号 1737, 國立印刷局 編, 2005.5.15, 6-7頁.

9) 池田眞朗, “動産・債權担保の展開と課題-新設された動産讓渡登記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 通号 1202, 判例タイムズ社, 2006.4.15, 27-28頁.

10) 土手敏行, 前掲論文, 26-27頁; 秋山二郎, “債權・動産讓渡登記制度”, 『登記研究』 第704号, ティハン, 2006.10, 276頁.

한 신청방식을 분석해 보면, 창구신청이 83.5%, 우편신청이 16.5%고, 본인신청이 39.8%, 대리인신청이 60.2%가 된다¹¹⁾. 그러나,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을 이용하면, 등기소의 창구에 나갈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데이터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증명서의 청구에 걸리는 수수료가 저렴해 진다. 그리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빨리 입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²⁾. 또한 등기파일에 기록되는 사항(신청데이터)의 비밀성보호 정도도 높으므로, 회사(또는 대리인인 사법서사의 사무소 등)의 PC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가 있는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¹³⁾.

이러한 등기의 대상인 양도목적물이 되는 동산은 개별동산 뿐만 아니라, 집합동산도 허용되는데, 약 1년간의 실적은 집합동산이 약 7할, 개별동산이 약 3할 정도에 이른다¹⁴⁾. 다만, 등기된 동산의 약 75%가 창고 내에 있는 재고상품 등의 이른바 집합동산(등기규칙 제8조 1항 2호에 의한 특정 방법의 것)으로 등기되고 있다¹⁵⁾.

Ⅲ. 주요내용

1. 등기절차

(1) 등기신청의 절차

1) 사전절차

법무성디지털신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환경을 확인(a.동작환경의 확인)을 한 후, 법무성이 발행하는 안전한 통신을 실시하기 위해

11) 民事局商事課, 前掲論文, 102-103頁; 土手敏行, 前掲論文, 24頁; 秋山二郎, 前掲論文, 276頁; 鳥貫 剛, “動産讓渡登記制度の動向”, 『登記情報』 551号,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7.10, 30頁.

12) <http://www.moj.go.jp/MINJI/DOUSANTOUKI/ONLINE/tetsuzuki03.html> (2008.4.20); 民事局商事課, 前掲論文, 104頁.

13) 土手敏行, 前掲論文, 26-27頁; 秋山二郎, 前掲論文, 276頁.

14) 民事局商事課, 前掲論文, 102-103頁; 土手敏行, 前掲論文, 24頁; 秋山二郎, 前掲論文, 276-277頁.

15) 등기원인에 대해 보면, 『양도담보』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청이 전체의 몇 퍼센트 있었다(秋山二郎, 前掲論文, 276-277頁).

서 필요한 증명서(법무성 인증국 자기서명증명서)를 취득해, 이용하는 브라우저 환경상에 등록(b.법무성 인증국 자기서명증명서의 취득/등록)한다. 그 후, 신청자측의 PC환경에 필요한 JRE(Java Runtime Environment)의 인스톨(c.JRE의 인스톨)과 신청자측의 PC환경에서 동작하는 디지털신청시스템의 인스톨러를 인스톨(d.디지털신청시스템의 인스톨러의 인스톨)을 한다. 그리고, 디지털증명서가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¹⁶⁾, 정부인증기반(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구성하는 브릿지 인증국(BCA)과 상호인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디지털증명서를 취득받고(e.디지털증명서의 취득), 유저레지스트레이션(User Registrations)을 실시해 신청자 ID와 패스워드를 부여(f.신청자정보 사전등록)받는다¹⁷⁾.

2) 신청절차

위와 같은 사전준비절차를 거친 후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자는 디지털신청시스템에 로그인해, 필요한 절차양식을 취득(a.절차양식의 취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신청서의 작성, 취하서의 작성, 납부정보의 입력, 디지털서명의 부여를 실시(b.신청데이터의 작성)한다. 다만, 신청데이터에 복수인에 의한 서로 다른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데이터에 디지털서명의 추가(c.서명 추가)를 실시한다. 그 후, 미송신 절차 일람화면으로부터, 송신대상의 신청데이터를 선택해 송신(d.신청데이터의 송신)한다. 이러한 신청의사의 확인 후, 수신이 완료되면, 법무성 디지털신청시스템에서 도달확인표가 송부되므로, 이를 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e.도달확인표의 보존).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동산양도등기소에서 심사완료 후, 처리상황 일람화면에 납부정보가 게시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인터넷 뱅킹, 세입금 디지털납부 대응의 ATM 등을 이용해 납부(f.등록·면허세의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부 후에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상황이 『절차종료』라고 표시된다. 등기가 되면 창구 등

16) 동산양도등기(연장등기, 말소등기 포함)의 디지털신청에 대해서는 디지털증명서가 필요하다.

17) a.동작환경의 확인 → b.법무성 인증국의 자기서명증명서의 취득/등록 → c.JRE의 인스톨 → d.디지털신청시스템 인스톨러의 인스톨 → e.디지털증명서의 취득 → f.신청자정보의 사전등록

에서의 신청과 같이, 신청인에 대해 서면에 의한 통지가 된다(g.처리상황 확인)¹⁸⁾.

다만,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의 경우, ①법정대리인에 의해 실시하는 신청, ②연장등기 및 말소등기 가운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표시가 동산양도등기파일에 기록된 표시와 다를 때(다만,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바뀌어야 할 등기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③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신청할 때, ④동산양도등기의 신청으로, 등기의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을 때, ⑤연장등기의 신청으로, 연장 후의 등기의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을 때에는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2) 등기증명서교부청구절차

1) 사전절차 단계

디지털증명서교부의 경우도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¹⁹⁾.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및 개요기록사항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명 및 디지털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개요기록사항증명서의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작성지원소프트의 인스톨이라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된다²⁰⁾는 차이점이 있다.

2) 신청절차 단계

전술한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의 절차와 동일하나,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과는 달리 디지털서명의 추가가 없고,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신에 등기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점과 신청데이터작성시 개요기록사항증명서의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작성지원소프트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18) a.절차양식의 취득 → b.신청데이터의 작성 → c.서명 추가 → d.신청데이터의 송신 → e.도달확인표의 보존 → f.등록 · 면허세의 납부 → g.처리상황의 확인

19)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에서의 양도등기부(제2조 2호)는 양도등기기록을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 ·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20) a.동작환경의 확인 → b.법무성 인증국의 자기서명증명서의 취득/등록 → c.JRE의 인스톨 → d.디지털신청시스템 인스톨러의 인스톨 → e.디지털증명서의 취득 → f.신청자정보의 사전등록 → g.신청서작성 지원소프트의 인스톨

첨부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등기사항개요증명서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디지털 교부청구시에, ①법정대리인에 의해 실시하는 신청, ②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③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청구로, 신청인의 이름 또는 주소(법인은 상호 혹은 명칭 또는 본점 혹은 주된 사무소) 표시가 동산양도등기파일의 기록과 다를 때(다만,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바뀌어야 할 등기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디지털증명서의 교부·청구는 할 수 없는데, ①을 제외한 ②,③의 경우는 위의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의 제한과 다른 것이다²¹⁾. 그리고 디지털증명서의 청구에 대해, 증명서의 전자적 기록의 교부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법무성의 디지털신청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하게 된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은 본인이 지정한 폴더의 내부에 공문서 폴더가 만들어지고²²⁾, 이 공문서 폴더 안에 디지털증명서가 존재하게 된다.

2. 중요사항

동산양도특별법은 동산양도의 공시방법으로 인도에 덧붙여 등기제도를 채택하였다²³⁾. 즉, 내용의 요점을 보면, ①종래의 채권양도특별법상의 등기와 같은 형태로 동산양도등기제도가 창설되어 지금까지 점유개정이 라고 하는 불안정한 공시수단 밖에 가지지 않았던 동산양도담보에 명확한 공시방법이 주어졌다. ②또한 종래의 상업등기부에 양도의 개략을 다시 옮겨적는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동산양도등기사항개요파일을 작성해 열람에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대상은 「법인이 하는」 동산의 양도로 한정된다. 다만 양수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이어도 좋다. 그리고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대상이 되는

21) a.절차양식의 취득 → b.신청데이터의 작성 → c.신청데이터의 송신 → d.도달확인표의 보존 → e.등기수수료의 납부 → f.처리상황의 확인

22) <http://www.mj.go.jp/MINJI/DOUSANTOUKI/ONLINE/tetsuzuki03.html>(2008.4.20).

23) 土手敏行, 前掲論文, 42頁; 植垣勝裕/ 高山崇彦/ 中原裕彦, 前掲論文, 8-9頁; 김인유, 전계논문, 368면; 배성호, 전계논문, 48면; 윤부찬, 전계논문, 426면.

양도의 목적은 아무런 제한도 없다. 그리고 그 등기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제7조 3항)²⁴⁾.

법인²⁵⁾이 동산(해당 동산에는 화물교환증, 예증권(豫證券) 및 질입증권, 창하증권(倉荷證券) 또는 선하증권이 작성되고 있는 것은 제외)을 양도했을 경우에, 해당 동산양도의 동산양도등기과일에 양도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동산에 대해 민법 제178조의 인도가 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의 양도의 목적물이 되는 「동산」은 개별동산 및 집합동산도 가능하다(제3조 1항). 다만, 자동차, 선박, 소형선박, 항공기 등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민법의 대항요건과는 별개로 소유권의 득실에 관한 대항요건이 설정되어 있는 동산 중에, 이미 특별법에 따라 등록 등이 된 것의 양도는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²⁶⁾.

디지털동산양도등기가 되었을 때, 당해 동산에 대해 「민법 제178조의 인도가 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제3조 1항), 디지털동산양도등기가 되면 민법 제178조의 인도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취지이다²⁷⁾.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대해 디지털동산양도등기가 경합했을 경우

24)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동산·채권양도등기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 등기가 영구히 존속하게 되고 시스템에 부하가 과대해져서 검색 등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산·채권양도등기의 존속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제9조에서는 동산의 경우 현재 실무상 동산양도계약이 5년에서 10년의 범위로 재계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였다. 다만, 재고상품 등을 증권화하고 그 상환기간을 10년이 넘게 할 때와 같이 존속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을 넘겨 존속기간을 설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의 법인은 상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위 법(안)에 따르면 법인인 이상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학교·종교·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사법인·공법인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다만 양도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이 아니므로 양도등기를 할 수 없다.

26)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에서는 법인이 동산을 양도(진정양도, 담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 담보 등 양도의 목적을 가리지 아니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양도등기할 수 있다. 다만 ①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선박,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등록된 동산, ②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③무기명채권증서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된다.

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동산양도등기와 민법 제178조의 인도가 경합했을 경우의 우열은, 등기가 되었을 때와 인도가 되었을 때의 선후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동산양도등기에는 『등기의 년·월·일』(제7조 2항 8호) 및 『등기의 시각』도 기록될 예정이다(채권양도등기규칙 제13조 1항 4호 참조)²⁸⁾.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 그 동산의 양수인(소유자)으로부터 대리인이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리인의 입장을 배려해, 대리인은 지체 없이 본인에 대해서 해당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것을 알려야 할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양수인에 대한 해당 동산의 인도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3조 2항). 또한,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해, 대리인은 등기상의 양수인에게 해당 동산을 인도하여, 이에 의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3조 2항)²⁹⁾. 이것은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상, 본인에게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³⁰⁾.

27)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산양도등기 효력부정설과 긍정설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등기 남용문제와 거래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법원행정처, 전게서, 46면).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8)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특례법(안) 제4조 1항은 법인이 동산을 양도하여 이 법에 따라 양도등기를 마친 때에 그 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188조의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29) 본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우선한다. 또한 본인, 대리인 및 양수인 이외의 법률관계는 민법의 해석에 맡겨진다(배성호, 전게논문, 61면).

30)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특례법(안) 제4조 2항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하여 제1항의 양도등기를 마친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한 경우, 제3자는 양도인에게 인도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이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양수인으로 등기된 자에게 동산을 인도함에 따라 양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가 취소·해제 기타 원인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제10조 1항 2호), 이 등기에 대해서도 민법 제178조의 인도와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3조 3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1항). 또한, 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대리인에게 동산을 점유시키고 있었을 경우에,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말소등기에 의해 양도인이 소유자인 것 같은 외관이 부여된 것과 같은 상황은, 동산양도등기에 의해 양수인이 소유자인 것 같은 외관이 부여되는 상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점유대리인에 관한 제3조 2항의 규정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조 3항)³¹⁾.

3. 개선논의

(1) 등기신청 이전단계

1) 관할관청과 디지털증명서

디지털동산양도등기를 소관하는 등기소는 전국에 1개소(동경 법무국) 밖에 없고,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은 양도인 및 양수인의 디지털증명서가 필요하다³²⁾.

그런데,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양도인 및 양수인의 디지털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소가 발행하는 디지털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인 및 개인 모두 디지털증명서의 취득자수가 적은 것이 디지털신청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³³⁾.

이 점은 아마, 디지털증명서의 범용성, 즉, 다른 각 분야에서의 디지털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신청절차가 증가하거나, 민사계약의 관행에

31) 植垣勝裕 / 高山崇彦 / 中原裕彦, 前掲論文, 9-15頁; 김인유, 전계논문, 369-374면; 배성호, 전계논문, 49-54면; 윤부찬, 전계논문, 427-435면.

32) 土手敏行, 前掲論文, 26-27頁; 秋山二郎, 前掲論文, 276頁.

33) 제도상 양도인(자금조달 주체)은 법인으로 한정되고 있지만, 양수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양수인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도 무방하다.

있어서 디지털계약 등에서의 디지털증명서의 요구가 증가되는 것이 개선의 최대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³⁴⁾.

2) 주변절차의 정비

각종 신청절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필요한 디지털증명서 등의 취득방법의 간략화(및 저비용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디지털화)와 수수료 등의 금전납부의 디지털화라는 주변의 절차정비를 통한 수고와 비용의 경감이 필요하다³⁵⁾. 이는 일련의 절차를 디지털화해서 그 절차전반의 제도의 미비나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³⁶⁾.

(2) 등기신청 단계

1) 공동신청주의

부동산디지털등기도입 당시의 단독신청주의와 같은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의 디지털서명과 디지털증명서를 요구해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 자체는, 신청의 진정함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신청주의가 타당하다고 한다³⁷⁾.

2) 등기관의 심사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심사에 착수해, 동일한 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거에 동산양도등기의 여부는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동산양도등기가 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양도인에 대해서, 해당 채권 또는 동산에 대해 그 밖에 동산양도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취지의 증명서

34) 池田眞朗, 前掲論文, 11頁.

35)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는 양도등기시스템을 법인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법인인 양도인의 상호 등이 법인등기부상 변경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양도등기부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는 규정을 두었다.

36) 池田眞朗, 前掲論文, 12-13頁.

37) 池田眞朗, 前掲論文, 11頁.

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거치는 것으로, 등기에 의해 동산양도의 대항력을 구비한 자가 그 밖에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확인을 하면, 이중으로 동산양도등기가 된다고 하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등기의 신속처리와 보정의 불허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는 민법상의 대항요건제도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 있는 동산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그 동산양도의 당사자는 민법의 대항요건과 동산양도특별법의 대항요건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동산양도등기제도는 동산양도에 관한 유일한 대항요건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항요건제도와는 관계상, 등기의 신청은 신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느 제도도 등기되었을 때에는 대항요건이 구비되게 되는 것으로, 디지털동산양도등기 파일의 기록은 동산마다 편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등기신청을 접수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동일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동산양도등기에 대해 신청의 순서와 등기의 순서가 역전하는 사태를 막는 일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는 대항요건의 원활한 취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수의 순서에 따른 신속한 등기신청의 처리가 강하게 요청되지만, 양제도에 대해 등기신청의 보정을 인정하면, 등기관으로서 보정을 필요로 하는 등기신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것이 보정될 때까지 해당 신청보다 늦은 모든 등기신청의 처리를 정지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동산을 활용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지장을 초래해, 본제도의 존재의의가 손상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등기신청의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³⁸⁾.

38) 또한 등기신청은 등기 또는 각하결정이 될 때까지 간격이 있다면, 서면에 의해 철회할 수가 있다.

(3) 등기신청 이후 단계

1) 공시내용에 대해

디지털동산양도등기는 양도인(질권설정자) 및 양수인(질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해 동산양도에 관한 일정한 사항이 해당 신청에 근거해 동산양도등기과일에 기록되지만, 이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해, 디지털동산양도등기가 민법 제178조의 인도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동산양도가 있던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지, 양도와 관련되는 개개의 동산 자체의 존재나 권리의 현상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등록의 배제 및 제도의 신뢰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밀성은 요구된다³⁹⁾.

2) 동산 등 담보용자(ABL) 및 동산감정사제도

이번 시행된 동산양도특례법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이른바 동산 등 담보용자(Asset Based Lending: ABL)⁴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동산양도특례법이 시행된 2005년 10월에 상공조합중앙금고에서 후쿠오카은행과 제휴해, 『다시마』 등의 해산물 가공품을 담보로 하는 syndication loan형⁴¹⁾ ABL를 실행하였다. 이것이,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의 ABL로서 syndication(기업조합, 채권인수조합)으로 대처한 선구적인 것인 동시에,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활용한 예라 할 것이다. 상공조합중앙금고가 개발한 ABL은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주목해, 재고·수취계정·유동예금을 일체로 한 담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취득담보의 가치를 사업청산에 의한 담보처분이 아니라, 사업계속을 전제로 한 사업가치의 전체에서 찾아내고 있

39) 池田眞朗, 前掲論文, 15頁.

40) ABL이란 동산·채권 등의 사업수익자산을 담보로 하여, 담보자산의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해, 자산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자금조달을 실시하는 수법으로, 종래는 실무의 번잡함이나 법적 권리의 불안정성이 장애였지만, 공시제도의 정비나 IT에 의한 재고관리 고도화, 요즈음의 재무제표 정밀도의 향상 등에 의해, 실무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이익이 크다.

41)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증장기 대출을 말한다[[http://100.naver.com/100.nhn?docid=748936\(2008.4.20\)](http://100.naver.com/100.nhn?docid=748936(2008.4.20))].

다⁴²⁾. 또한 일본은 동산담보유자의 공적 보증이나 담보를 평가하는 전문 지식에 대한 자격을 인정하는 『동산감정사』제도의 창설 등과 같은 동산담보유자의 보급촉진 대책도 착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민간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성·실효성이 있는 동산담보유자에 불가결한 동산의 환금처분을 위한 유통시장의 형성이나, 동산의 평가·관리 수법의 확립 등과 관련되는 환경도 착실하게 정비하고 있다⁴³⁾.

IV. 도입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동산양도등기법안)을 만들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금조달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과도하게 중시하여, 입법에 대해 조금 부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입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는 크게 법제도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⁴⁾.

1. 법제도적 측면

(1) 사용자등록제도의 도입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디지털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확인에 대하여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디지털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사용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⁴⁵⁾. 이와 함께 동산양도등기법안 제14조 및 제15

42) 池田眞朗, 前掲論文, 16-17頁.

43) 秋山二郎, 前掲論文, 278-280頁.

44) 池田眞朗, 前掲論文, 18頁.

45) 법원행정처, 전계서, 78-81면.

조의 규정과 같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필요하다.

(2) 당사자신청주의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제도의 도입시에 당사자신청주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신청주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서는 당사자신청주의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 진행되는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의 추진방향은 일정한 범위의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의 인도와 동산양도등기의 대등적 효력을 가진 병행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진정성 확보를 통한 허위등기 방지 및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충실한 등기내용의 기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신청주의가 강제신청주의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다. 이때 당사자 신청주의에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디지털문서의 이용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제도의 도입이 되는 경우 등기신청을 위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형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문서의 이용일 것이다. 즉, 현재의 동산양도가 인도주의에 의한 점유의 이전이라는 행위적 요소를 주요한 요소로 하였다면, 디지털동산양도등기는 디지털문서라는 형식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디지털문서의 사용시에는 이 문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관인이나 디지털인증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등기내용의 공개성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동산양도등기에 대해 일본과 같이 양도당사자(이해관계 있는 자 포함)와 제3자를 구분하여 공개범위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정보내용에

따라 다른 개시방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디지털동산양도등기 제도는 동산양도에 관해 등기로서 성립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 동산에 관해 유효한 법률관계에 서는 자라면 누구라도 등기사항의 개시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도인이 어떠한 동산을 소유하고 양도하고 있는지의 정보는 양도인의 영업비밀 내지는 사업 전략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상 경쟁상대방 등 당해 양도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까지 개시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⁶⁾.

(5) 등기부편성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에 관하여 물적편성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동산양도등기의 경우 물적편성주의를 취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권리의 정확한 공시, 검색의 신속·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양도인을 기준으로 한 등기부를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산양도인인 기업의 상호 등을 기준으로 검색함으로써 그 기업이 행한 모든 동산양도등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인적편성주의를 채용하고 있다⁴⁷⁾. 또한 동산양도등기법안도 양도인을 기준으로 편성될 양도등기부를 예정하고 있다⁴⁸⁾. 다만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경우 인터넷상의 검색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검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물권변동시기

우리나라에서 동산의 물권변동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 즉 동산에서는 인도가 요구된다. 즉 현재 동산의 물권변동에서는 물권적 의사표시와 함께 점유의 이전이라는 행위적 요소가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디지털등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등기당사자에게 사전등록(事前登

46) 植垣勝裕/高山崇彦/中原裕彦/坂田大吾, “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説(3·完), 『NBL』 No.804, 2005.3.1, 54頁; 배성호, 전계논문, 50면.

47) 윤부찬, 전계논문, 435-436면.

48) 법원행정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행정처, 2007, 65면.

錄)을 하게 하는 방식상의 요건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⁴⁹⁾. 또한 동산등기 신청은 법정서면(法定書面)을 제출해야 하는 서면주의의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권적 의사표시와 함께 인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물권적 의사표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인도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등기의 성립시점이 원칙적으로 동산물권변동의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동산양도등기신청서의 접수시점은 신청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도달하여 등기부에 Key lock이 설정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교합(校合)⁵⁰⁾이 있는 때 물권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동산양도등기에서는 이러한 교합은 전자적 처리(디지털관인 또는 디지털서명 등)에 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합으로 인해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신뢰할 수 있다는 측면과 교합을 함으로써 등기가 완료되고 일반공중에公示된다는 측면에서 동산양도등기의 교합이 있을 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입법적 측면

구체적으로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새로운 동산양도등기법안에 디지털등기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의 규정이 필요하다.

첫째, 기록 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등기에 따른 자기디스크 접수의 날로부터 1년간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49)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디지털동산양도등기를 관장할 기관(대법원,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50) 교합이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한 후 그 기재말미에 날인하는 것으로서, 교합 후에는 등기신청을 취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4).

둘째,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동산의 특징에 의해 특정하는 방법(동산의 종류, 동산의 기호, 번호 그 외의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 ②동산의 소재에 의해 특정하는 방법(동산의 종류,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청자기디스크의 송부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디스크에 대한 표준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신청자기디스크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어서의 영업소(외국회사의 등기를 한 외국회사이며, 한국에 영업소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때는, 그 성명 및 주소, ②양도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동산양도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날짜,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산을 특별히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물건, 동산양도등기의 존속기간, ③디지털신청디스크에는 신청인의 이름(법인에 있어서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④이외에, 기타 사항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은 고시해야 하다.

다섯째,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 혹은 대리인(이하 『신청인 등』)은, 관련 장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등기신청서 및 신청자기디스크의 제출에 대신해, 일정한 사항⁵¹⁾과 관련되는 정보에 디지털서명을

51) 일본의 경우 1. 동산등기령(動産登記令) 제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①등기의 목적, ②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③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일본에 있어서의 영업소(외국회사의 등기를 한 외국회사이며 일본에 영업소를 마련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④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때에는,

갖춘 것을 송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인 등의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시 관할장이 정하는 것에 따라, 등기법이 규정하는 사항⁵²⁾과 관련되는 정보를 아울러 송신할 수가 있다. 또한 연장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인, 양수인,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의 표시가 동산양도등기과일에 기록된 표시와 다를 때에는, 신청인 등은 관할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신해야 할 등기정보의 송신을 지정법인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아울러 송신해야 한다.

V. 맺음말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 이외의 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동산양도등기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동산양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산양도등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경우 일본과 같이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제도적·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법제도적으로는 여러가지 제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이용에 있어서 등기주체의

그 성명 및 주소, ⑤등록면허세의 액, ⑥년·월·일, ⑦등기소의 표시), 2. 동산양도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령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①법 제7조 제2항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 또는 법 제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②전(前)2호의 사항 이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연장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령 제7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①등기원인 및 그 날짜, ②해당 연장등기 등에 관련되는 동산양도등기 또는 채권양도등기 등의 등기번호, ③연장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연장 후의 존속기간)과 같은 사항을 필요로 한다.

52) 일본의 경우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산의 명칭, 양도에 관련되는 채권 또는 질권이 목적으로 된 채권의 변제기, 기타 해당 동산을 특별히 정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진정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등기내용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공동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당사자신청주의 도입과 디지털동산양도등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문서의 이용에 있어서 문서의 진정성확보를 위한 디지털관인이나 디지털인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등기내용의 정보보호차원에서의 등기에 따른 등기내용 공개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또한 넷째, 등기부편성에 있어서 권리의 정확한 공시, 검색의 신속·편의성을 위한 양도인 기준의 인적편성주의 채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동산의 물권변동에 대해서는, 물권적 의사표시와 인도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현행과 달리, 디지털동산양도등기의 경우에는 물권적 의사표시와 함께 등기신청에 있어서 교합이 있을 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동산양도등기법안에 디지털동산등기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기록 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청 자기디스크의 송부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신청 자기디스크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동산양도, 디지털등기, 온라인등기, 동산, 동산양도등기

參考文獻

I. 國內文獻

- 김인유, “집합동산양도의 새로운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3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3.
- 배성호, “동산양도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일본의 새로운 동산공시법을 참조하여”, 『재산법연구』 제23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6.
- 법원행정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행정처, 2007.
- 윤부찬,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2권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9.

II. 外國文獻

- 島貫 剛, “動産讓渡登記制度の動向”, 『登記情報』 551号,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7.10.
- 土手敏行, “現在の動産讓渡登記および債權讓渡登記の利用狀況ならびに今の動向について”, 『NBL』 No.831, 商事法務, 2006.4.15.
- 法務省民事局商事課, “動産讓渡登記制度運用開始後1年間の利用狀況について”, 『民事月報』 Vol.62.1, 法務省民事局, 2007.1.
- 植垣勝裕/ 高山崇彦/ 中原裕彦, “法令解説 動産讓渡登記制度の創設及び債權讓渡登記制度の見直し--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時の法令』 通号 1737, 國立印刷局 編, 2005.5.15.
- 植垣勝裕/ 高山崇彦/ 中原裕彦/ 坂田大吾, “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説(3・完)”, 『NBL』 No.804, 2005.3.1.

池田眞朗, “債權渡登記および動産讓渡登記の利用とオンライン申請”, 『みんけん』No.592, 誌友會民事研修偏集室, 2006.8.

———, “動産・債權担保の展開と課題-新設された動産讓渡登記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通号 1202, 判例タイムズ社, 2006.4.15.

秋山二郎, “債權・動産讓渡登記制度”, 登記研究 第704号, 『テイハン』, 2006.10.

A Study on Digital Registration of Assignment of Movable Properties in Japan

Park, Kwang-Dong*

To activate fund-raising through movable property, Korea and Japan needed to establish a system for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transfer. For the purpose, Japan has already established a special law for transfer of movable property and discuss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such a law is currently underway in Korea.

In the event that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transfer comes into effect in Korea, digital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transfer would take effect just as in Japan.

As stated above, discussion about solutions of problems concerned with enforcement of digital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transfer is currently underway in Japan.

This suggests that Korea should also examine legal and legislative problems before introduction of digital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transfer.

In connection with it, some legal systems should be prepared. To be specific, a user of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the registering subject in the use of digital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transfer, first of all. In the second place,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by the party concer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joint application details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registration as well as digital seal and digital certification required for security of authenticity of documents in the use of digital documents to be followed a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introduction of digital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transfer. In the third place, in a way to protect registration information, details of registration should be classified. In the fourth place, the

* Associate Research Fellow i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h.D. in Law

register should be compiled on the basis of transferer for precise public notice of the right, and fast and easy retrieval. Lastly, with reference to the change of a real right, unlike the existing system that the real right is changed with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transfer of a real right, the real right for digital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should be regarded as being changed only whe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f a real right is matched with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the legislative aspect, the movable property transfer registration bill should have a provision of legal ground for digital registration of movable property, and enforcement rules should have detail provisions about it. To be specific, such rules should have provisions about keeping period of records, particulars to specify movable property, delivery method of application magnetic disc, items to be written on the application magnetic disc and application method for registration by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
|---|
| <p>KEY WORDS Assignment of Movable Properties, Digital Registration, Online Registration, Movable Properties, Registration of Assignment of Movable Properties</p> |
|---|